

전주지방법원 2015. 11. 17 선고 2014가단24411 판결 [건물철거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변론 종결 2015. 11. 3.

판결 선고 2015. 11. 17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,

가. 전라북도 완주군 D 전 5127㎡ 중 별지 1 도면 표시 순번 19, 20, 21, 22, 23, 1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측사 41㎡ 및 위 도면 표시 순번 18, 19, 23, 24, 25,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(다) 부분 콘크리트 포장 99㎡를 각철거하고, 위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순번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398㎡를 인도하고,

나. 공동하여 11,672,850원 및 이에 대한 2015. 10. 30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공동하여 2015. 4. 1.부터 전라북도 완주군 D 전 5127㎡ 중 별지 2 도면 표시 순번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398㎡를 인도할 때까지 월 191,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1989. 4. 3. 전라북도 완주군 D 전 5127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매수한 후 1989. 4. 28.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피고 B는 1997. 6.9.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라북도 완주군 E 전 2325㎡(이하 '이 사건 인접토지'라 한다)를 매수한 후 1997. 6. 12.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인접토지에 축사를 지어 소를 사육해 왔는데, 점점 그운영규모가 커지면서 우사를 확장하다가 결국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기 시작하였는데, 2004년경부터 피고들이 소를 사육하면서 축사 부지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별지 2 도면의 (나) 부분 398㎡이며, 피고들은 그 중 별지 1도면의 (나) 부분 41㎡는 축사로, (다) 부분 99㎡는 축사 관리 도로로 이를 각 사용하고 있다.

다.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(나) 부분 398㎡에 대한 2015. 1. 1.부터 2015. 3.31.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11,672,850원이며, 위 부분에 대한 2015. 4. 1.부터의 월임료는 191,040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,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, 감정인 G의 각 측량감정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원고에게, 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(나)부분 축사 41㎡, 위 도면 (다) 부분 콘크리트 포장 99㎡를 각 철거하고, 별지 1 도면(나) 부분 398㎡ 토지를 인도하고, ② 공동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(나) 부분 398㎡에 대한 2015. 1. 1.부터 2015. 3. 31.까지의 임료 합계액 11,672,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, 이 사건 원고의 2015. 10. 26.자 소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. 10. 30.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, ③ 공동하여 2015. 4.1.부터 별지 2 도면 (나)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191,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, 피고들이 침범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원고와 소외 H가 그 경작권을 교환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, 이 사건 청구는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한 청구로서 경작권의 유무는 그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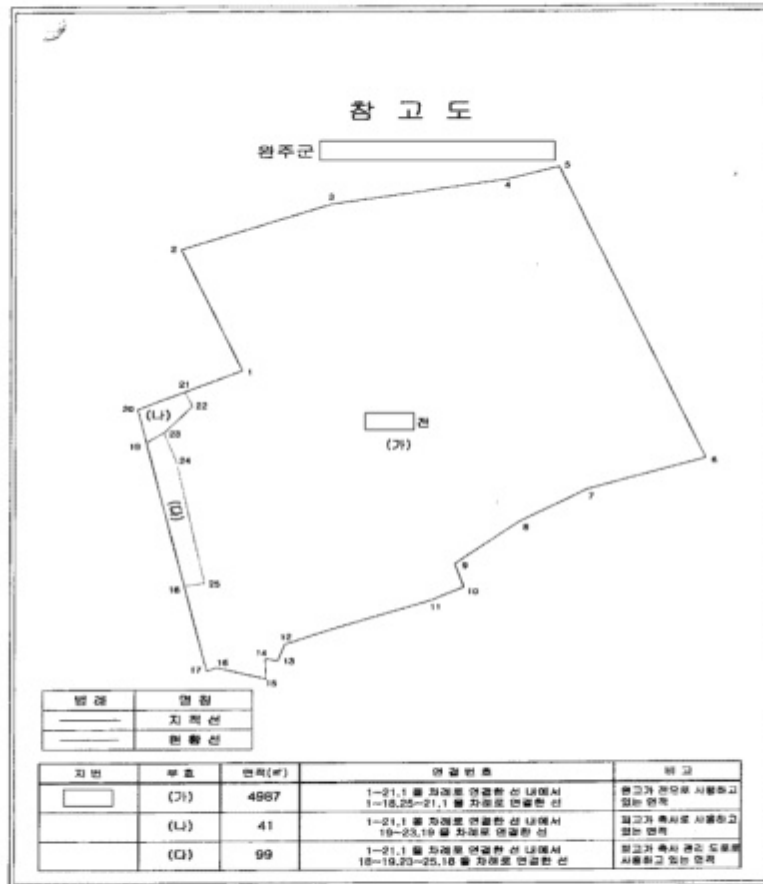
다음으로 피고들은, 이 사건 인접토지를 피고 B가 매수할 당시 경계측량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축사를 확장하였다가 나중에 경계측량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, 이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다룰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.

판사 이원근

별지 1. 도면



별지 2. 도면

